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61

발의연월일: 2021. 7. 9.

발 의 자 : 남인순・양경숙・박성준

강선우 · 박홍근 · 송재호

정춘숙 · 최혜영 · 허종식

이성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 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상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는데,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절차에 비해 복잡하여 부당이득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금은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절차가 있어 부당이득 환수가 용이함.

한편, 현행법 제7조제3항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정하여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비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며,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1조, 제43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을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 9조제9항 단서"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을 "제86조까지, 제109조제 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 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장기요양 관련 비용" 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로,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를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 관련 비용에"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를 "거짓이나"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를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청구하여"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를 "장기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수급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해당 장기요양기

관으로부터"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 관련 비용을 받은 때해당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로, "수급자에게"를 "수급자 또는 신청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급자에게"를 "수급자 또는 신청인에게"로, "수급자가"를 "수급자 또는 신청인이"로 한다.

- 이 경우 장기요양 관련 비용을 받은 자가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한다.
 - 가. 제1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른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나.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제6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제6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

제65조 중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장기요양기관"을 각각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 -----제69조제4항·제5항 및 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 제109조제9항 단서-----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 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 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 등에 관한 준용) -----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 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 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 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 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 항까지 및 제110조는-----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 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

보험가입자"로 본다.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 저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생 략)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 전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u>.</u>
에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
계기준) ①
제4항
② (현행과 같음)
세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받은 자,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
급비용(이하 "장기요양 관련 비
용" 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u>장기요양급여,</u> 장
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
<u> 관련 비용에</u>
<u> </u>

- 1. ~ 3. (생략)
-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 <u>짓이나</u>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신 설>

<신 설>

- 5. (생략)
- ②·③ (생 략)
- 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 이 경우 장기요양 관 련 비용을 받은 자가 제4호 가 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 | 제57조제2항을 준용한 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u>거짓이나</u>---------다음 각 목의 비용을 청구하여-----
 - 가. 제1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른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나.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 5.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 🌢 -----장기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수급 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 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양 관련 비용을 받은 때 해당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으 <u>로부터-----수급자</u>

하	는	금	액-	을	ユ	<u>수</u> 급	급자	<u>가</u>	납.	부
하	여여	ì	하	는	장:	기요	양년	킨 험	료.	등
과	상	계	할	수	٥Ĵ	다.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생략)
-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 ② (생 략)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

	또는 신청인에게
제	 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1. (현행과 같음) <u>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u>
제	<u>료기관</u> ② (현행과 같음) 61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 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장기요양기관
- 2. (생략)
- ③ ~ ⑥ (생 략)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7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u>장기</u>요양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u>장기요양기관</u>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제2조제9호
·.
제6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장기</u>
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
- <u>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u>
,